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소 방 공 무 원 기 장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진영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소방공무원 기장 운영체계 정비와 집행을 통해 정돈된 제복착용 풍토를 마련하고, 시대상황에 맞춰 소방공무원의 기장의 종류를 확대,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기장의 종류를 현재 3종 4점에서 5종 32점으로 확대하고 기장의 수여대상자는 소방청장이 정함(안 제2조제1항)
- 나. 기장의 수여 대상자는 소속기관장이 소방청장에게 추천하고,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수여 절차 근거를 마련(안 제2조제3항 신설)
- 다.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을 정하는 별표는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삭제(안 제3조)
- 라. 다른 법령의 개정에 맞춰 기장의 패용을 정하는 조항에서 ‘예복’은 삭제(안 제5조제2항)
- 마. 기장 수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·관리하도록 규정을 신설(안 제6조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0년도 기정예산에 반영되었음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1. 20. ~ 2. 29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개정령안

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소방공무원기장(이하 “소방기장”이라 한다)은 이를 소방지휘관장 · 소방근속기장 · 소방공로장 · 소방경력기장 및 소방기념장으로 구분하되, 그 수여대상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소속기관장은 수여대상자를 소방청장에게 추천하여야하고, 소방청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대상자를 확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) 소방기장의 도형 · 제식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제2항 본문 중 “소방기장은 예복 또는”을 “소방기장은”으로 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수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· 관리하여야 한다.

별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개정안																
제2조(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) ①소방공무원기장(이하 “소방기장”이라 한다)은 이를 소방지휘관장·소방근속기장 및 소방기념장으로 구분하되, 그 수여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.		제2조(소방공무원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) ①소방공무원기장(이하 “소방기장”이라 한다)은 이를 소방지휘관장·소방근속기장·소방공로장·소방경력기장 및 소방기념장으로 구분하되, 그 수여대상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h colspan="2">소방기장의 종류</th><th>수여대상자</th></tr> <tr> <td colspan="2">소방지휘관장</td><td>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 이상의 소방기관의 장</td></tr> <tr> <td rowspan="3">소방 근속 기장</td><td>안전장</td><td>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</td></tr> <tr> <td>봉사장</td><td>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</td></tr> <tr> <td>소방장</td><td>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속한 자</td></tr> <tr> <td colspan="2">소방기념장</td><td>국가적 주요행사 또는 주요사업과 관련한 소방업무를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완벽하게 수행한 소방공무원</td></tr> </table>		소방기장의 종류		수여대상자	소방지휘관장		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 이상의 소방기관의 장	소방 근속 기장	안전장	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	봉사장	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	소방장	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속한 자	소방기념장		국가적 주요행사 또는 주요사업과 관련한 소방업무를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완벽하게 수행한 소방공무원	
소방기장의 종류		수여대상자																
소방지휘관장		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 이상의 소방기관의 장																
소방 근속 기장	안전장	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																
	봉사장	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																
	소방장	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속한 자																
소방기념장		국가적 주요행사 또는 주요사업과 관련한 소방업무를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완벽하게 수행한 소방공무원																
② (생략) <u><신설></u>		②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
제3조(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)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. 다만, 소방기념장의 도형 및 제식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.		③소속기관장은 수여대상자를 소방청장에게 추천하여야하고, 소방청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대상자를 확정한다. 제3조(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) 소방기장의 도형·제식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.																

제5조(패용) ① (생 략) ②소방기장은 <u>예복 또는 정복을 착용한 때에 패용한다. 다만, 직무수행상 패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패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 제6조(기장수여대장) (생 략) <u><신 설></u> [별표 1]	제5조(패용) ① (현행과 같음) ②소방기장은 ----- -----. ----- -----. 제6조(기장수여대장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수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 [별표 1] 삭제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소방청 소방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5 - 7422